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 발생과 관련하여 **입원 또는 격리된 분**들은
**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**를 받거나, **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**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**는 **유급휴가비용**을, 그 밖의 **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**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**(중복지원 불가)**

**(시행기간 : 2020.2.17.~별도 공지시 까지)**

##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
□ **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**

-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**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*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**(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(연월차) 제외)**를 제공한 사업주**

  * **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**를 받고 격리(입원)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**

□ **지원제외**

☑ **"국가"·"공공기관" 및 "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"등의 사업주**

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**

☑ **(중복지원 제외)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**

☑ **'20.4.1일 0시 이후**(입국검역 강화 조치) **모든 국가 입국자**

* '20.4.1.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('20.4.1.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·접촉자에 한함)

□ **지원금액 : 격리기간** 동안 **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** (1일 최대 13만원)

□ **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**

□ **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**(퇴원일) **이후** ~ 별도 공지시까지

□ **신청서류 :**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

**※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.**

#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□ **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**

-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**보건소의 격리·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*(가구단위 지원)**

* **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**를 받고 격리(입원)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**

□ **지원제외**

☑ **"국가"·"공공기관" 및 "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"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**

- **다만,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**

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격리조치를 위반한 자**

☑ **(중복지원 제외)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**

☑ **'20.4.1일 0시 이후**(입국검역 강화 조치) **모든 국가 입국자**

* '20.4.1.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('20.4.1.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·접촉자에 한함)

□ **지원금액 : 격리시작** 당시 **주민등록표***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

*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

(단위 : 원/월)
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활지원비('21년) | 474,600 | 802,000 | 1,035,000 | 1,266,900 | 1,496,700 |

※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

※ 격리 기간이 '20년인 경우, '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

□ **신청기관 : 관할 읍·면·동**

□ **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**(퇴원일) **이후** ~ 별도 공지시까지

□ **신청서류 :**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

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**※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또는 시군구청(☎ )으로 연락바랍니다.**